

(제2안)

수신 : 건설부장관 (도시시설계획과장)

제목 : 같 음.

1. 우리시 도시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을 별첨과 같이 결정하였기

보고 합니다.

첨부 : 고시문 사본 및 도면 각1부. 끝.

(제3안)

수신 : 총무처장관

제목 : 관보게재 의뢰

1. 별첨 서울특별시 고시 제 호('88.12.)의 내용을 관보게재 의뢰

하오니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첨부 : 고시안 사본 2부. 끝.

(제4안)

수신 : 관악구청장 (도시정비과장)

제목 : 같 음.

1. 도정30310-1122호('88.10.27)와 관현임.

2. 위 대호로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결정 요청한 입안건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

고시하였기 통보하니 업무에 착오없기 바라며, 도시계획법 제13조에 의거 서적송인을 이행

3789

바람.

첨부 : 고시문사본 및 도면 각1부. 끝.

(계5안)

수신 : 수신처참조 - *SHJ*

발신 : 과장

제목 : 갑 음.



1. 우리서관내에 별첨과 같이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결정 되었기에 통보하니

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첨부 : 고시문사본 및 도면 각1부. 끝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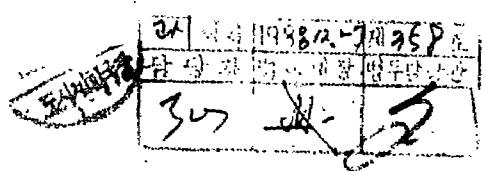
수신처 : 도시계획과장, 도로과장, 교통기획과장, 하수과장, 치수과장.

3990

고

시

서울특별시 고시 제 호
도시계획시설(주차장)결정

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을 도시계획법 제12조 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1항 1호 나목 규정에 의거 결정하였기 같은법 제12조 4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
2. 관계도면은 관악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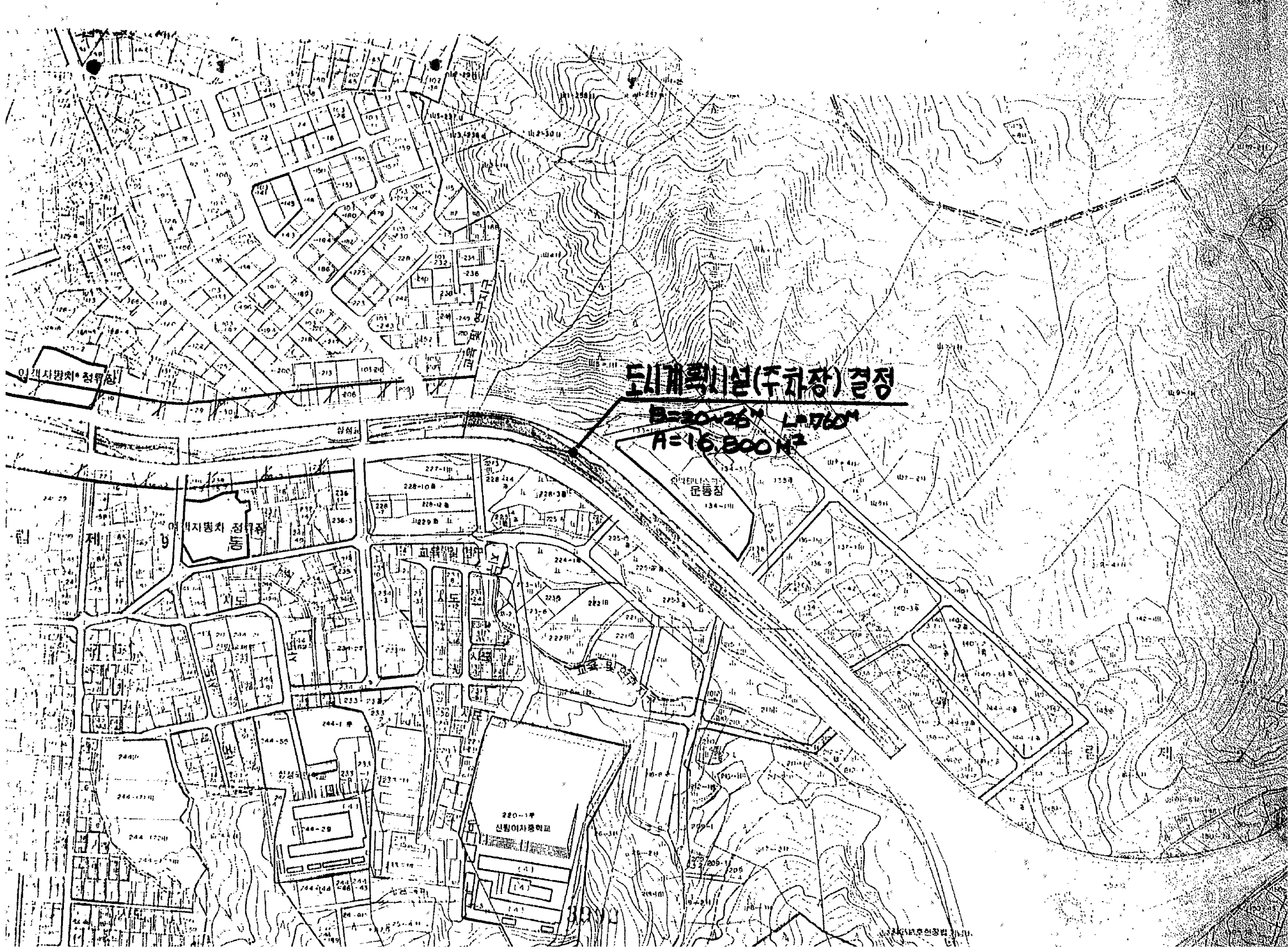
1988. 12. 27

서울특별시장

○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결정 조서

구분	시설명	위 치	규 모	비 고
신설	주차장	관악구 신림동 서울대앞광장-화랑교간도림천 (808-123) (241-122)	B=20-26m L=760m A=16,800m ²	

○ 도면 : 관악구청 비치도면과 같음. 끝.



도시계획시설(주차장)결정

B=20~26m L=76m
A=16,800m²

이재지명치 정류장

이재지명치 정류장

운동장

신림여자중학교

'88. 12. 9

도시 계획 위원회 회의록

('88년 제8차 위원회 본회의)

선 결 과	장		장	장	장
접수일시	1988 12 9	시	시	시	시
처리부	시설 계획과	과	과	과	과

서울특별시 도시 계획 위원회

회 의 개 최 상 황

- 일 시 : '88. 12. 9 15:00-19:00
- 장 소 : 기획상황실
- 참 석 : 20명중 16명

(참석위원)	위원	이광노	위원	안영백
	"	김경동	"	오희영
	"	황명찬	"	안범수
	"	최의소	"	장창호
	"	여흥구	"	박무서
	"	하택일	"	임철순
	"	신성호	"	김영수
	"	강덕기	"	이 동
(불참위원)	위원장	김진원	위원	김대중
	위원	도철웅	"	김인식
	"	이원택		

- 기탁참석 : 간사, 상임기획단 이종재, 시설계획과장 이병학, 재개발과장 박명화,
 주택개발과장 양갑, 종합계획계장 강창구, 지역계획계장 문승국,
 토지계장 주봉현

제22안 금호 제1구역 주택개량 재개발 변경결정 가결
 ○ 성동구 남호동 산37-1번지 일대
 구역 일부삭제
 337,820 - 267,260 (감 70,560m²)

제23안 금호 제5구역 주택개량 재개발 변경결정 가결
 ○ 성동구 금호동 1351번지 일대
 구역 일부추가
 71,446 - 74,884 (증 3,438m²)

제24안 - 제37안 (14개안) 수권소위원회

제38안 주차장 결정 가결
 ○ 관악구 신림동 241-122호 - 808-123호
 B=20 - 26m
 L=760m
 A=16,800m²

일 등

등의(가결)

제6안 : 주차장 결정

○ 관악구 신림동 241-122호 - 808 - 123 호

B=20 - 26m

L=760m

A=16,800m²

과 장

제안설명(심의안에 의함)

위원장

학전을 복개하여 주차장 시설을 합니까

과 장

서울대 정문쪽으로 일부 복개 하는것입니다.

휴일은 주차시설이 부족합니다.

위원장

학전을 복개해서 주차장을 확보 하논것인데 가결하면 어떨까요.

일 등

등의(가결)

제7안 : 공장 변경결정

○ 서초구 서초동 67일대(서초 제2공장)

9,010m² > 0 (해제)

○ 강남구 삼성동 174일대 (삼성제2공장)

11,040m² > 0 (해제)

○ 강남구 학동 148일대 (학동공장)

10,800m² > 0 (해제)

주봉현

제안설명(심의안에 의함)

서초공장과 삼성제2공장은 제5차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축소

할것이 아니라 전부 해제 의견이 있어 폐지 상정하였으며

학동 공장도 이미 보상협의 되었으나 같은 성질의 것으로서 폐지

상정하게 되었습니다.